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 21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강릉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공고를 원칙으로 하여 민간위탁 업체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민간위탁 운영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한 제도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재위탁', '기간연장'을 삭제하여 민간위탁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 나.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만 협약이 해지된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4조제4항)
- 다.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안건 심의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둠 (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u>재위탁</u>"이라 함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4. "<u>기간연장</u>"이라 함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u>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u> 기간을 정하여 민간</p>	<p>제2조(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사무</u>----- -----</p>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 설>

④ (생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략)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단 삭제>

④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위탁기간만료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의 변경도 포함한다.)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대상사무 및 위탁기간

2.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의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평가

3. 제4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⑤ (생략)

<신설>

-----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
-----.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시장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증·개축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생략)

제17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 6. (생략)
- ② ~ ④ (생략)

제18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약의 해지 등) ① -----

-----.

1. 제12조-----
2. ~ 6.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제3자 위탁 등 금지) 이 조
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

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다.

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
·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다. 또한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
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위탁기간만료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의 변경도 포함한다.)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을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제4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3자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다. 또한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재위탁, 기간연장 등의 의회 동의를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